

자유회전예금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자유회전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 거래에는 "예금거래기본약관"과 "거치식예금 약관" 및 이 예금특약을 적용한다.

제 2 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제한 없음 (단,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.)

제 4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신규금액은 **100 만원 이상**으로 한다.

제 5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**1 개월 이상 30 년 이하 일단위로** 한다.

다만, 이자지급식은 3 개월이상 30 년이하 일단위로 한다.

제 6 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한다.

제 7 조 회전주기

- ① 이 예금의 회전주기란 금리가 변경 되는 주기를 말하며 1 개월 이상 3년 이하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.
- ② 회전주기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매 회전주기 만료일 전에 다음 회전주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.
- ③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하며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당하는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한다.

- ④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로 인해 회전주기 만료일이 이연된 경우 다음 회전주기 만료일은 최초회전주기 만료일의 응당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.

제 8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매 회전주기 만료일마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하고 해지시 지급한다. 다만, 이자지급 식의 경우 매 회전주기 마다 회전주기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단위로 계산한 총 이자를 해당 회전주기 개월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며, 1 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- ③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영업점에 게시한 아래의 기간별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- 만기 후 1 개월 이내: 만기 당시 고시한 1 개월 일반정기예금 이율
 - 만기 후 1 개월 초과: 연 1.0%

제 9 조 중도해지

예금주가 만기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최종회전주기 만료일까지는 매 회전 주기 시작일에 고시한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고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에 가산하고 최종회전주기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.

- 예금일 이후 1 회전주기 경과 전 해지
 - 15 일 미만: 연 0.1%
 - 15 일 이상: 연 1.0%
- 회전주기 경과 후 해지
 - 매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지하는 경우: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
 - 매 회전주기 만료일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
 -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 전일까지: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
 -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: 연 1.0%

제 10 조 양도 및 담보제공

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하다.

※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